

# 무허가 정치망 설치 불법 조업 어민 입건

## 속초해경, 죽왕면 선적 임모씨 ... 2008년부터 무허가로 어구 설치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무허가로 바다에 정치망 어구를 설치해 놓고 조업을 해온 임모씨(52세, 고성군 문암향 1길 거주)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H(4톤, 죽왕면 선적 소형정치망어업)호 선주겸 선장인 임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2월 14일까지 고성군 봉포리 봉포항 동남방 0.1해리 해상에 정치망 어구 1틀(1ha)을 허가없이 설치해 놓고 조업을 해오

다. 지난해 12월15일 연말연시 특별형사 활동기간중 경비정에 적발됐다.

한편 정치성 구획어업은 정치성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상당히 오랜 기간 고정·설치해 연안에 유영해 오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 함정으로 유도해 잡는 어업으로 반드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정된 구역에 어구를 설치해야 한다.

원광연 기자

## 새해부터 하수오니·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 속초해경, 폐기물 위탁업체에 협조 당부

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에 따라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에 투기해 온 하수처리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새해부터 전면 금지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1월 1일부터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

를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관내 폐기물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재활용 등) 현황을 점검하고, 육상처리가 미진한 위탁업체에 대해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곤

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1년 강원북부지역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은 18,863㎥로 2010년 24,804㎥에 비해 약 23%가 감소했으며, 올해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되면 지난해 대비 약 60%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광연 기자

## 금은방 등에 순찰카드 기록부 설치

### 고성경찰서 분기별 실적 평가해 표창

고성경찰서는 지난해말부터 금은방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 순찰카드 기록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범죄예방 순찰기록부는 금은방, 금융기관, 편의점 등 범죄에 취약한 점포 등을 선정, 점포 내부에 순찰카드 기록부를 비치하고 범죄예방활동을 벌이는 시스템이다.

지역경찰은 2시간 마다, 교통·정보? 형사 등은 외근활동 시 수시로 순찰카드 기록부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보순찰 및 범죄예방활동 사항을 기록해 가시적 범죄예방활동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경찰서가 지난해말부터 현금다액 취급업소에 범죄예방 순찰카드 기록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로 순찰 기록부를 분석해 순찰카드 최다 기록자 2명을 선정,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 고성군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

### 20일까지 화진포정보화마을·군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고성군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 주민들의 정보이용 활용능력 향상과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보화교육은 화진포정보화마을 정보센터와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각각 마을주민 10명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컴퓨터 기초과정으로 윈도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은 정보화에 소외된 주민과 학



지난 5일 화진포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생들에게 인터넷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읍면에 정보이용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원광연 기자

## 총기류 일제점검 안내문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12.3.26~27(2일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개인소지 총기류의 도난,분실 및 불법행위로 인한 테러 등 범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자 「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 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점검기간 : 2011년 12월 26일 ~ 2012년 2월 20일(8주간)
2. 점검 및 영치장소 : 고성경찰서 (지구대·파출소)
3. 점검 및 영치대상 : 전체 공기총(5.5mm 단탄 제외) 및 공기권총, 마취총
4. 임시영치 기간 : 점검 직후 ~ 행사종료시
5. 점검 및 임시영치 방법 : 상기 점검기간 중 점검장소 방문, 제출
6. 임시영치 대상 : 총집(케이스)을 포함한 전체 총기(또는 공기총 중요부품)
7. 지참물 : 소지허가증, 총기 등 점검대상물, 주민등록증(신분확인)
8. 벌칙규정 :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에 불응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총포검사불응 :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총단법 제42조, 제72조)
- ▶ 보관명령불응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총단법 제47조, 제71조)

## 고성경찰서장

※ 안내전화번호 :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과 (전화 : 033-680-6347)